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5. 2. 26.(수)
- 회부일자: 2025. 2. 26.(수)
- 검토기간: 2025. 2. 26.(수) - 2025. 3. 12.(수)

2. 개정이유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지양하여 직원(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재기재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달서구의회 직원(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 나. 상위법령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일수 정비(안 별표 1)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직원(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등을 지양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재기재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법률 등에 이를 규정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근무시간 외 전화·문화·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7월 29일)이 발의되는 등 노동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제7조의7제1항은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을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퇴근·휴일 중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양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프랑스는 2017년 ‘연결받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전에 규정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4년 4월 퇴근·휴일 중인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호주는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이 권리를 규정한 공정노동법을 시행하고 있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⑫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